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41
----------	------

제출년월일 : 2009. 2. 9.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상위 법령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감면대상의 축소 및 명확화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안 제2조, 3조)
- 나.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안 제10조)
- 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동일 수준으로 감면 (안 제11조)
- 라.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안 제12조의2)
- 마.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1조)
- 바.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중복 감면규정 정비 (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8-666호(2008.11.5.~ 2008.11.25.)
- 의견제출사항 : 없음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법 제9조, 2009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 경상남도 세정과-3316(2008. 09. 26.), 세정과-3729(2008.10.07.), 3920(2008.10.13.)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1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와 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

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7조제3호, 제15조의4제3호, 제25조의2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 4. (생 략) ② (생 략)</p>	<p>.....</p> <p>.....</p> <p>.....</p> <p>.....</p> <p>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p> <p>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p> <p><u>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u></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u>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u>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1.</p> <p>2.</p> <p><u><삭 제></u></p> <p>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p> <p>.....취락지구 정비계획</p> <p>.....</p> <p>.....</p> <p>.....</p> <p>.....</p> <p>.....</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 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생략)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p>	<p>.....</p> <p>.....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p> <p>.....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p> <p>.....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p> <p>3. (현행과 같음) ②</p> <p>.....</p> <p>.....</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p> <p>.....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3.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p>.....</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 을 받은자와 「농산물가공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 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p>

현행	개정안
<p>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직 안
<p><신 설></p>	<p>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p> <p>.....</p> <p>.....(주택).....</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9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p> <p>.....</p> <p>.....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p> <p>.....</p> <p>.....</p> <p>.....</p> <p>.....</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1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p> <p>.....「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 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p> <p>.....</p> <p>.....</p>
<p>제28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p> <p>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8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p> <p>「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